

제327회 시의회 정례회  
행정자치위원회

# 감사위원회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

---

2024. 11.

감 사 위 원 회

#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

감사위원회 소관 공포조례안의 폐지 및 일부개정을 위한 예산반영 현황 보고

## □ 공포 조례안 및 예산반영 현황 내역 (2023년 5월 ~ 2024년 4월)

공포일	조례명	예산반영 현황	향후 예산반영 계획
'23.5.22.	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▶ ('23년) 24백만원 ▶ ('24년) 11백만원 ▶ ('25년) 10백만원	▶ ('25년) 예산 반영 완료
'23.10.4.	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▶ ('23년) 42백만원 ▶ ('24년) 29백만원 ▶ ('25년) 35백만원	▶ ('25년) 예산 반영 완료
'23.5.22.	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	▶ 조례 폐지 예산 미반영	▶ 해당사항 없음
'23.10.4.	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▶ 문구 수정으로 예산 미반영	▶ 해당사항 없음

## □ 사유 및 기타의견 등

- 「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'23.5.22.)
  -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기관, 공직자에 대해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(제6조의3),
  - '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' 및 '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·시상' 세부사업 내 포상금 반영('24년 11백만원, '25년 10백만원)
-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'23.10.4.)
  -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소송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(제7조의2),
  - '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', '적극행정 활성화' 세부사업 내 사무관리비 등 편성('24년 29백만원 중 일부, '25년 35백만원 중 일부)
-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('23.5.22.)
  - '13.8.1. 제정 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「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서 규정한 부조리 신고 및 관련 보상 내용(신고대상, 방법, 신고자 보호 규정)을 포함하고 있으므로,
  - 「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폐지에는 소요 비용이 없어 예산 반영 불필요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'23.10.4.)
  - 상위법령을 고려해 “공익제보”에 대한 용어 정의를 각 목으로 구분 및 정비하고자 하므로(제2조의1),
  - 문구 수정에는 소요 비용이 없어 예산 반영 불필요